

##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15. 10. 28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25조 제9항 및 「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」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구축되는 국가연구시설·장비(이하 “연구시설·장비”라 한다)의 체계적 도입, 효율적 관리, 공동활용촉진 및 관리체계 등 연구시설·장비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하여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 본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 사업에서 구입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·장비(이하 “연구장비”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 ① “연구장비”란 연구개발을 위하여 요구되는 ‘연구시설’과 ‘연구장비’를 말한다.

② “연구시설”이란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며,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공간(무균실, 동물실, 풍동, 수조, 연구용 선박, 연구용 항공기 등)을 말한다.

③ “연구장비”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,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(주로 분석, 시험, 계측, 교육훈련,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)을 말한다.

④ “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”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단계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한 구축의 중복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성·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.

⑤ “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”이라 함은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예산집행단계에서 구축하려는 1억이상의 고가 연구시설·장비 구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성·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구매비용 3천만원 이상,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
2.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상정
3. 3천만원 이상 공동활용 대상 연구장비의 선정
4. 3천만원 이상의 유휴·저활용·불용연구시설·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
5. 연구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
6. 연구장비의 특성, 활용기간,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(구매/개발/임차) 검토 및 결정
7. 그밖에 연구시설·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의 구성은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7~15인 내외로 하되,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고, 외부위원의 비율은 30% 이상으로 한다.

② 내부위원은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장비 구매 빈도가 높은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추천받아

선발한다.

③ 당연직 위원 및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외부위원은 기업체 또는 타 대학의 연구장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선발한다.

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별도 재임명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자동 연장할 수 있다.

⑥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,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 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회의개최 시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④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, 이때에는 총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장비도입심의 및 관리) ①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장비도입부서장이나 연구자(이하 “장비도입부서장”이라 한다)는 장비도입 심의 요청서(별지서식1호), 장비도입 요구서(별지서식1-1호), 장비 활용계획서(별지서식1-3호) 등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장비도입 여부는 제7조 ③항 또는 ④항의 방법으로 의결(가결, 부결 또는 보완)하며,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장비 변경도입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.

③ 심의위원은 장비도입 여부를 심의완료한 후에 심의 결정사항(별지서식2호)과 그 이유를 연구장비도입 심의결정서(별지서식3호)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④ 1억원 미만의 장비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장비도입을 추진하고, 1억원 이상의 장비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별도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‘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’ 또는 ‘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’에 상정해야 한다.

⑤ 장비도입이 완료되면 NTIS(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)에 30일 이내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.

⑥ 연구장비 상태변경장비 발생 시 분기마다 연구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장비의 내구성, 활용상태, 사용빈도 등에 따라 저활용, 유휴, 불용을 판정하고 절차에 따라 장비의 자산이관 및 불용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9조(장비상태관리) ① 연구장비 상태변경장비 발생 시 분기마다

제10조(간사) ① 본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

[별지 제1-1호 서식]

연구장비 도입요구서			
도입 장비명	한글		
	영문		
수량/단위		도입가격(VAT포함)	
<p><b>1. 기본정보</b></p> <p><b>1) 장비용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입하려는 장비를 이용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자세히 기술</li> <li>○ 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을 적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할 것.</li> </ul> <p><b>2) 주요사양(규격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비의 사양(규격)을 기재</li> <li>○ 내용이 많을 경우 규격서 별첨</li> </ul> <p><b>3) 취득방법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체개발, 국내외 구매구분 및 취득방법 기술</li> </ul> <p><b>4) 국내외 기기 보유현황(중복성 검토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연구시설장비공동활용서비스(<a href="http://www.ntis.go.kr">http://www.ntis.go.kr</a>)에서 중복기자재 검토</li> </ul> <p><b>5) 장비특성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비의 특성 기술</li> </ul>			

## 2. 운영정보

### 1) 운영기반 조성 여부

- 장비운영기반(설치장소, 환경 등)을 구체적으로 기술

### 2) 운영비 확보 방안

- 장비 운영비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

### 3) 운영시 전문성

- 운영부서의 장비분야 전문성에 대한 기술

### 4) 운영부서 실적

- 운영부서의 장비 운영실적 및 능력 기술

### 5) 운영전문가 확보 여부

- 운영 전문가의 확보 여부 및 전문가에 대한 기술

### 3. 타당성

#### 1) 사업 분야 타당성(도입 필요성)

- 사업(연구)분야에 대한 구매 장비의 예상파급효과 기술 또는 신청하는 장비와 관련된 수행과제와의 관련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

#### 2) 수요 및 파급효과

- 구축장비의 수요 및 구축시 예상파급효과 기술

#### 3) 유사 동종장비 차별성

- 유사 동종 장비와의 차별성 기술
- 구축하려는 장비가 중복가능성이 우려되는 장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와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이유

### 4. 노후 대체 장비의 경우

#### 1) 시기적 적절성

- 대체시기의 적절성 기술

#### 2) 대체예정 노후장비의 활용실적 기술

- 대체예정 노후장비의 활용실적 기술

[별지 제1-2호 서식]

연구장비 활용계획서			
도입 장비명	한글		
	영문		
수량/단위		도입가격(VAT포함)	
<p><b>1. 기본활용계획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입부서의 장비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</li> </ul> <p><b>2. 예상 활용건수/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구축대상장비의 예상 활용건수를 월별로 기록</li> </ul> <p><b>3. 공동 활용계획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관내·외부 공동활용여부 기술 및 계획 기록</li> </ul> <p><b>4. 전문인력 양성계획/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비를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년단위로 기록</li> </ul>			



[별지 제2호 서식]

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서			
도입 장비명	한글		
	영문		
수량/단위		도입가격(VAT포함)	
심사내용		심사의견	
1. 기본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장비용도</li> <li>◦주요사양(규격)</li> <li>◦취득방법</li> <li>◦국내외 기기보유현황(중복성 검토)</li> <li>◦장비특성</li> </ul>			
2. 운영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운영기반조성여부</li> <li>◦운영비 확보 방안</li> <li>◦운영시 전문성</li> <li>◦운영부서 실적</li> <li>◦운영전문가 확보 여부</li> </ul>			
3. 타당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사업분야 타당성(필요성)</li> <li>◦수요 및 파급효과</li> <li>◦유사동종장비와의 차별성</li> </ul>			
4. 노후 대체 장비의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시기적 적절성</li> <li>◦대체예정 노후장비의 활용실적</li> </ul>			
5. 활용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기본활용계획</li> <li>◦예상활용건수/월</li> <li>◦공동활용계획</li> <li>◦전문인력양성계획/년</li> </ul>			
심사결과			보완의견 (보완가결의 경우)
가결	부결	보완가결	
연구장비심의위원회 위원장 (서명)			성명

[별지 제3호 서식]

연구장비도입 심의결정서			
도입 장비명	한글		
	영문		
수량/단위		도입가격(VAT포함)	
연구장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			
심의결정사항			결정이유(보완사항 등)
가	부	보완가결	
위와 같이 심의 결정함   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			
연구장비심의위원회		위원장 :           (서명) 위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서명) 위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서명) 위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서명) 위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서명)	
위원장이 호선한 위원이 대표 서명			